

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표
(제7조제1항 관련)

시험의 종류		기준등급	
		5급 공무원, 7급 공무원(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, 외교정보기술직 렬 외무공무원 포함) 공개경쟁채용시험	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
한국사능력 검정시험	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 (한국사능력검정시험)을 말한다.	2급 이상	2급 이상

비고

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, 7급 공무원(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,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)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,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. 이 경우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